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95
----------	-------

발의연월일 : 2026. 8. 26.

발 의 자 : 조지연 · 김태규 · 임이자
우재준 · 고동진 · 박수영
김정재 · 이달희 · 박준태
김상훈 · 안철수 · 강명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고,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하고자 함(안 제

3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도로 한다”를 “한도로 하되,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 ⑨ (생략)

한도로 하되,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② ~ ⑨ (현행과 같음)